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평가의뢰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사법보좌관 김윤한
건명 김정태 소유물건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전자
문서번호 2024타경22391
감정평가서번호 미래새한 2412-41-270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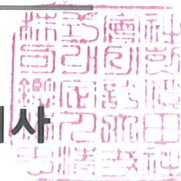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 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全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대전충청지사

Mirae & Saehan Appraisal Co.,LTD

TEL : (042)488-2161 FAX : (042)488-2162



(부동산)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 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문명성

문명성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대전충청지사

대표자 이응기



감정평가액		팔천이백일십칠만일천팔백원정 (₩82,171,800.-)				
의뢰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사법보좌관 김윤한	감정평가 목적	경매(강제)			
채무자	-	제출처	경매1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김정태 (2024타경22391)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록 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4-12-31	2024-12-27~ 2024-12-31	2024-12-31		
감정평가 내용	공부(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387	토지	387	211,000	81,657,000
	제시외건물	(23.4)	건물	23.4	22,000	514,800
			이하	여백		
	합계					₩82,171,8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 합니다. 심사자 감정평가사 이응기					



토지와 건물 감정평가 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충청남도 공주시 신기동	264-1	전	자연녹지지역	387	387	211,000	81,657,000	일부 '도로'	
소 계								₩81,657,000		
	[제시외건물]									
ㄱ	충청남도 공주시 신기동	264-1 264-2 위 지상	건사	파이프조 스레트 및 썬라이트지붕	(23.4)	23.4	22,000	514,800	90,000 x 5/20	
소 계								₩514,800		
합 계								₩82,171,800.-		
이					하		여		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대상물건은 충청남도 공주시 신기동 소재 작은요골마을 내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으로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의뢰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대상물건의 기본적 사항

일련번호	소재지	공부면적 (㎡)	사정면적 (㎡)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지세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원/㎡)	비고
1	신기동 264-1	387	387	전	자연녹지	잡종지	세각(가)	부정형완경사	74,500	-
합계		387	387	-	-	-	-	-	-	-

3. 기준가치

가. 개요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

나.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로서,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시장가치”, 즉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 목적(경매)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없 음.

5.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시점으로 정함.

6.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실지조사는 대상물건이 있는 곳에서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10조(대상물건의 확인)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상물건은 2024년 12월 30일자 현장실사를 통해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감정평가의 관련규정 및 적용방법

1.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등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감정평가 실무 기준」 등에 의거하여 평가함.

2. 감정평가 관련 규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 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토지의 감정평가]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 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3. 대상토지에 적용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

- 가.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의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에 따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등을 적용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시산가액(試算價額) 조정 및 합리성 검토를 통해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 나. 대상토지의 감정평가는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산출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그 밖의 사항

가. 본건 토지는 연접한 264-2와 연계된 운수회사(곰택시) 차고지의 주차장 용도로 이용중인 바, 지상 콘크리트 바닥포장의 정도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토지를 평가하되, 일부는 '도로'로 이용중인 바,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나. 지상의 제시외건물은 구조, 규모, 이용상황 등으로 보아 당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사료되며, 감정평가 목적 및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개략적인 실측에 의거 면적사정하되, 관리상태 및 현상 등을 고려하여 관찰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하였으니,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 등에 유의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I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가. 비교표준지의 선정 및 그 사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가능성이 있는 **표준지 A**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음.

[공시기준일 : 2024-01-01]

표준지	A	B
소재지	신기동 735	신기동 271
면적 (㎡)	2,407	476
지목	전	대
용도지역	자연녹지	자연녹지
이용상황	전	단독주택
도로교통	세로(가)	세로(가)
형상, 지세	부정형 완경사	부정형 완경사
공시지가 (원 / ㎡)	42,900	74,5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치를 산정하되, 기준시점까지 조사·발표되지 않은 기간의 지가변동률은 조사·발표된 월별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비교표준지	시군구	용도지역	산정기간	지가변동률 (%)	시점수정치	비고
A	충청남도 공주시	녹지	2024-01-01 ~ 2024-12-31	1.535	1.01535	2024년 11월 연장적용

다. 지역요인 비교

결정 의견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가 속한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
지역요인 비교치	1.000

라. 개별요인 비교

■ 일련번호 1 / 표준지A

조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대상/표준지)	비고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1.05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익성 등이 우세함.
자연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15	인근환경 등에서 우세함.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부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획지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경사도, 경사의 방향	1.20	일부 도로이용의 정도는 열세하나, 접면도로 상태 및 이용상황 등에서 우세함.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용자금 등 조장의 정도	1.00	대등함.
		규제의 정도 등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대등함.
개별요인 비교치			1.449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마. 그 밖의 요인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대법원판례 2003다38207판결(2004.5.14선고), "2002두5054(2003.7.25선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 토정 30241-36538, 1991.12.28) 등의 취지에 따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고자 함.

2)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조건	지가수준(원/㎡)	비고
자연녹지	주거나지	세로(가)	180,000 ~ 240,000	-

3) 인근지역의 경매통계 분석

■ 6개월 평균

[출처: 인포케어]

용도	총 남			공 주 시			신 기 동		
	낙찰가율	낙찰률 평균	낙찰건수	낙찰가율	낙찰률 평균	낙찰건수	낙찰가율	낙찰률 평균	낙찰건수
토지 / 전	50.03	51.25	182	40.59	42.78	15	0	0	0

4) 인근지역의 감정평가사례 및 실거래사례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화시스템 등]

기호	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조건	평가 목적	기준시점	토지단가 (원/㎡)	기준시점당시 개별공시지가 (원/㎡)
①	소학동 321-*	전	465	전	자연 녹지	세로 (가)	실거래	2023-12-26	226,000	53,700
②	소학동 26*	전	307	주거나지	자연 녹지	세로 (가)	실거래	2021-03-15	274,000	82,500
③	신기동 721-*	대	540	단독주택	자연 녹지	세로 (불)	경매	2024-08-05	155,000	72,5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기호	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조건	평가 목적	기준시점	토지단가 (원/㎡)	기준시점당시 개별공시지가 (원/㎡)
④	금학동 1*	답	664	답	자연 녹지	세로 (가)	경매	2023-07-21	145,000	107,400
⑤	신기동 41*	대	550	단독주택	자연 녹지	세로 (불)	담보	2023-12-27	152,000	63,900

5) 인근지역의 거래사례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기호	소재지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토지면적 (㎡)	거래금액 (원)	토지거래단가 (원/㎡)	거래시점
㉠	소학동 287-*	전	주거나지	자연녹지	627	150,000,000	239,000	2024-12-04
	· 토지 추정단가 : 150,000,000원 ÷ 627㎡ ≒ 239,000원/㎡							
	비 고	토지만의 거래사례임.						
㉡	소학동 18-*	대	단독주택	자연녹지	867	280,000,000	323,000	2023-03-03
	· 토지 추정단가 : 280,000,000원 ÷ 867㎡ ≒ 323,000원/㎡							
	비 고	토지만의 거래사례임.						
㉢	신기동 641-*	답	답	자연녹지	496	100,000,000	202,000	2022-09-17
	· 토지 추정단가 : 100,000,000원 ÷ 496㎡ ≒ 202,000원/㎡							
	비 고	토지만의 거래사례임.						
㉣	신기동 251-*	대	단독주택	자연녹지	342	75,000,000	219,000	2021-07-25
	· 토지 추정단가 : 75,000,000원 ÷ 342㎡ ≒ 219,000원/㎡							
	비 고	토지만의 거래사례임.						
㉤	소학동 4*	대	단독주택	자연녹지	902	181,000,000	201,000	2023-02-02
	· 토지 추정단가 : 181,000,000원 ÷ 902㎡ ≒ 201,000원/㎡							
	비 고	토지만의 거래사례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가) 비교사례 선정

상기 사례 중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비교표준지	선정사례
A	거래사례 ①

나)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식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사례단가} \times (\text{사정보정})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비교} \times \text{개별요인비교}}{\text{표준지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다)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구분		토지단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원/㎡)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거래사례	①	226,000	1.01554	1.000	0.635	145,740	3.346
표준지	A	42,900	1.01535	-	-	43,559	

산 내 출 역	시점수정	· 충청남도 공주시 녹지(2023-12-26~2024-12-31): 1.01554						
	지역요인	· 비교표준지는 사례의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1.000)						
	개별요인	가로조건 (택지조성)	접근조건	환경조건 (자연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	0.85	0.90	0.83	1.00	1.00	0.635
·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익성, 인근환경, 면적 및 경사 등에서 열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라)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상기 감정평가 사례, 거래사례, 인근지역 지가수준, 경매낙찰가율 등을 종합분석하고, 대상토지의 감정평가 목적 및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등을 종합 참작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

일련번호	표준지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1	A	3.346	3.34

7)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

일련번호	표준지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비고	
1	A	42,900	1.01535	1.000	1.449	3.34	210,808	211,000	-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

가. 평가개요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으로서, 대상토지의 합리성 검토는 인근지역에 있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거래시점으로부터 기준시점 현재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기타 가치형성요인 등을 종합 고려하여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였음.

나. 거래사례의 선정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는 거래사례로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이 유사하여 비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일련번호	거래사례
1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기호	소재지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토지면적 (㎡)	거래금액 (원)	토지거래단가 (원/㎡)	거래시점
㉠	소학동 287-*	전	주거나지	자연녹지	627	150,000,000	239,000	2024-12-04
	· 토지 추정단가 : 150,000,000원 ÷ 627㎡ ≒ 239,000원/㎡							
	비 고	토지만의 거래사례임.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사정보정

“사정보정(事情補正)”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 선정된 사례는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1.000)

라. 시점수정

시점수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비교사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사례의 거래시점으로부터 대상토지의 기준시점까지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치를 산정하되, 대상토지의 기준시점까지 조사·발표되지 않은 기간의 지가변동률은 조사·발표된 월별 지가변동률 중 대상토지의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거래 사례	시 군 구	용도지역	산 정 기 간	지가변동률 (%)	시점수정치	비 고
㉠	충청남도 공주시	녹지	2024-12-04 ~ 2024-12-31	0.144	1.00144	2024년 11월 연장적용

마. 지역요인 비교

결 정 의 견	대상토지는 거래사례가 속한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
지역요인 비교치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바. 개별요인 비교

■ 일련번호 1 / 거래사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격 차 율 (대상/사례)	비 고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0.95	인근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등에서 열세함.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0.98	자연환경 등에서 열세함.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부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획지 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경사도, 경사의 방향	0.97	접면도로 상태에서 우세하나, 형상 및 이용상황(일부 도로) 등이 열세함.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용자금 등 조장의 정도	1.00	대등함.
		규제의 정도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대등함.
개별요인 비교치			0.903	

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

일련 번호	사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비고	
1	㉠	239,000	1.00	1.00144	1.000	0.903	216,128	216,000	-

3. 각 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試算價額)

일련번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원/㎡)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원/㎡)	결정단가 (원/㎡)
1	211,000	216,000	21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시산가액 조정 및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산정된 시산가액 검토 결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동 규칙 제 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해 볼 때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주된 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5. 토지 감정평가액

일련 번호	소재지	공부면적 (㎡)	사정면적 (㎡)	토지단가 (원/㎡)	감정평가액 (원)	비고
1	충청남도 공주시 신기동 264-1	387	387	211,000	81,657,000	-
합 계		387	387	-	81,657,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V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1. 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된 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정된 대상토지의 시산가액은 동 규칙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 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2. 제시외 건물

제시외 건물은 구조·용도·사용자재·시공정도·부대설비 상태 등을 기초로 한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주된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을 적용하였으며, 감가수정은 내용연수와 경과연수를 고려한 정액법을 기준으로 하되,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법에 의하였음.

3. 감정평가액 결정

구 분	감정평가액(원)	비 고
토 지	81,657,000	상세내역은 “감정평가 명세표” 참조
제 시 외 건 물	514,800	
합 계	82,171,800	-

- 끝 -

토지 감정평가 요항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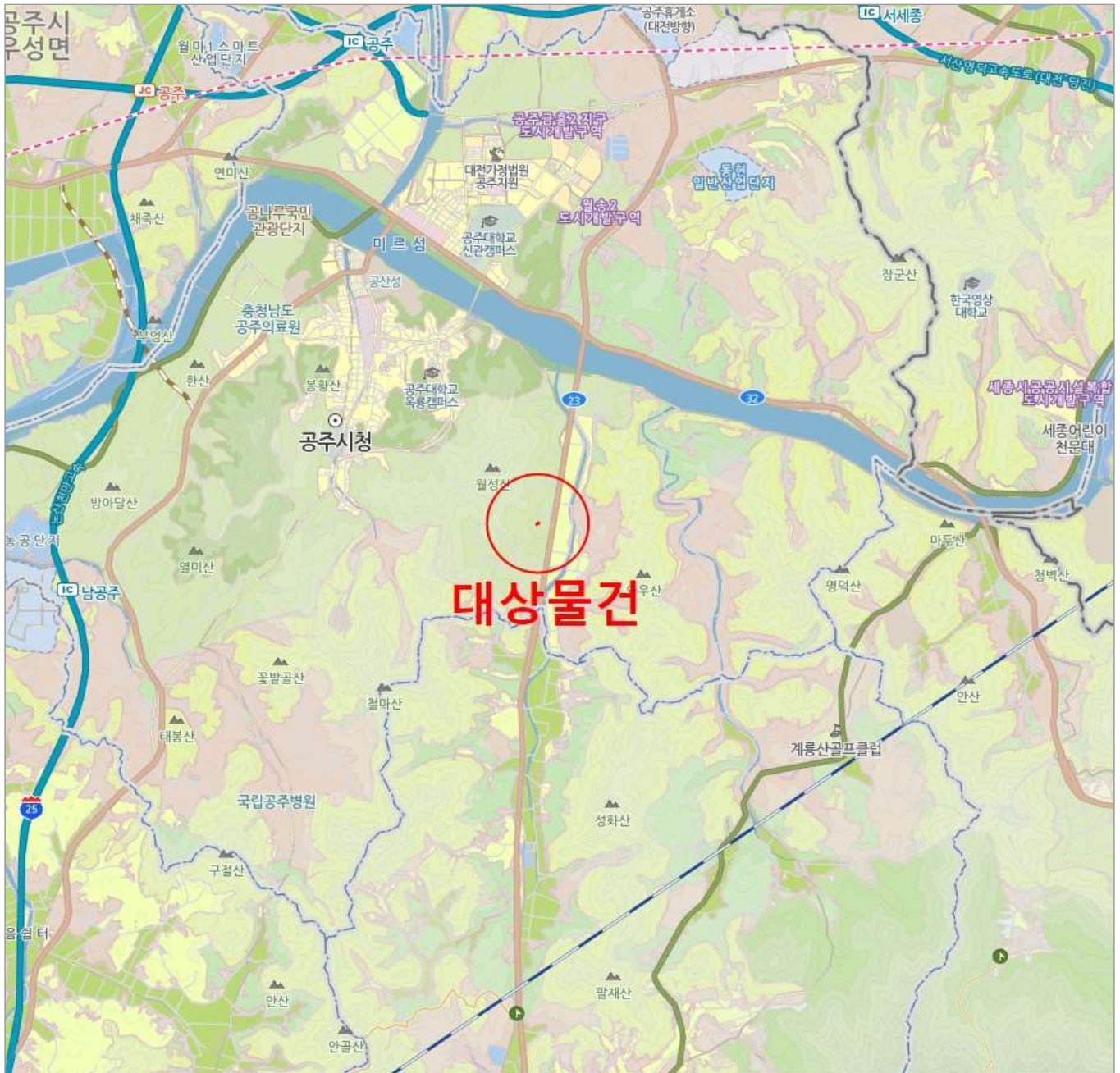
1. 위치 및 주위환경 4. 인접 도로상태 7. 공부와의 차이	2. 교통상황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3. 형태 및 이용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공주시 신기동 소재 '작은요골마을'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토지)으로서, 부근은 단독주택, 주거나지, 차고지 등으로 형성된 국도변 미개발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노선버스 정류장 및 중심상가지역 등으로의 거리 및 편익성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이며, 잡종지 및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남동측 및 북동측으로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양면이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잡종지' 및 일부 '도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광역 위치도

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신기동 26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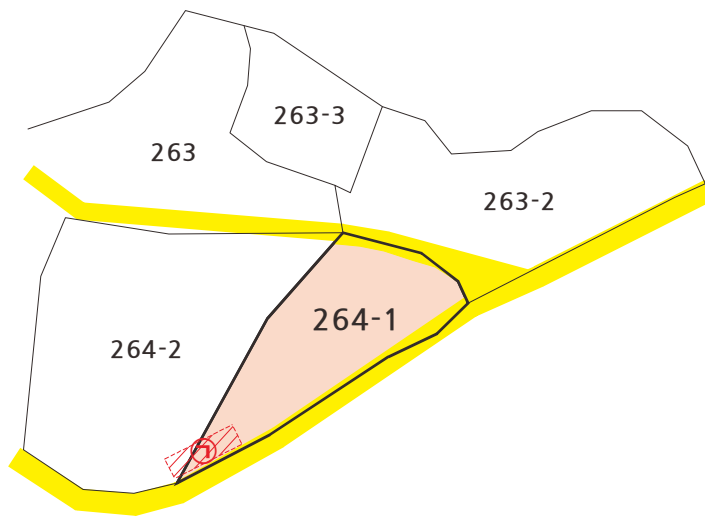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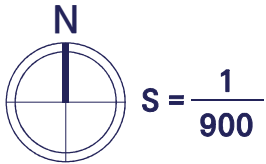
상세 위치도

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신기동 264-1



지 적 개 황 도



S = $\frac{1}{600}$



【제시외건물】

기호㉑ : 파이프조 스투트 및 쉐라이트지붕 견사 (2.6×9)≒23.4㎡

범례	평가대상토지	용도지역구분선	평가건물 3층이상
	도로	평가건물 1층	평가제외건물
	계획도로선	평가건물 2층	제시외건물

사 진 용 지



본건전경



본건전경



도로 및 제시외건물 ㄱ



제시외건물 ㄱ